



구비서류

1. 어선검사증서사본 또는 어선등록필증사본 및 타인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 선박등기부등본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법 제27조제1항의 경우에 한한다) 1부
2. 관리선사용지정증사본·어업허가증 사본 (법 제27조제3항의 경우에 한한다) 1부
3. 법인(법인어촌계를 제외한다)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
4. 어촌계총회의사록사본 (어촌계의 경우에 한한다)

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

